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4. 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1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3년 11월 26일)
상정, 심사, 보류
제186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4년 4월 1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감사담당관 김용인

가. 제안이유

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의 경우 민원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등 열린 행정 구현으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1) 옴부즈만 구성 (안 제3조)

- 3명 이내, 공개모집을 통해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
- 임기 2년(1회에 한하여 연임)
- 관련 분야 전문가,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,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등

2) 직무 (안 제4조)

-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옴부즈만에게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·처리

-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, 조정 등 처리
-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, 입찰, 계약체결,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,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 감사·평가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 처리

3) 권한 (안 제14조, 제16조, 제17조, 제19조)

-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, 부서 등에 자료제출 등 요구권
- 처분 등이 위법·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
-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
- 행정제도 개선권고 등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 및 점검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이진표)

- 동 제정조례안은, 행정기관의 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은 물론 마포구의 열린 행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관련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,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옴부즈만 제도 권고 등에 따라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」을 설치·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민원처리 관련 분야 전문가,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,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등을 대상으로 옴부즈만(임기2년, 3명이내)을 공개모집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(안 제3조)
 -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제출된 고충민원과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, 합의, 조정 및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, 입찰, 계약체결,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,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 감사·평가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·처리 (안 제4조)

- 민원조사 관련 자료제출 등 요구, 처분 등이 위법·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이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
 - 행정제도 개선권고,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 및 점검(안 제14조, 안 제16조, 안 제17조, 안 제19조)등으로
- 상위법인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」(2013.2.4.), 「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옴부즈만 제도 권고」(2010.9.27.)사항에 저촉됨이 없고, 또한 2013.10.4. ~ 2013.10.24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.
- 다만, 본 조례의 제13조2항 5호(그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)의 구체적 사항 명시, 제19조(권고등 이행실태의 확인·점검) 관련하여 구체적인 확인 및 점검방법 규정, 제21조(청렴계약 감시·평가 대상)에서의 감시평가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(공공사업의 범위등)명시, 제24조(운영지원)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수당 등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한 규칙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내실있는 마포구 옴부즈만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